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토보고서



2024. 6.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 6. 11.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달서구청장(세무과)
- 제출일자: 2024. 5. 30.(목)
- 회부일자: 2024. 5. 30.(목)
- 검토기간: 2024. 5. 30.(목) ~ 6. 5.(수)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우편의 송달 기준 상향(안 제5조)
 - 30만원 미만 → 45만원 미만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세기본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4. 4. 11.~5. 2.) 결과: 의견 없음
- 조례 ·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2023. 12. 29., 2024. 1. 1. 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지방세기본법 개정 2020. 12. 19.)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이하 “구세” 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 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방세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본거

지를 관할하는 지역 외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련 서류를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달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선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